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3.06.0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상명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파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그 외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공익신고 및 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부서(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무)

- ① 본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 6 조 (공익신고 접수부서 및 역할)

접수부서는 인권센터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접수를 위한 기준 제시
- 2. 공익신고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결정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 7 조 (공익신고의 접수)

- ① 접수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접수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을 관할하는 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제 8 조 (신고내용 확인 및 보완 요구)

- ① 접수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 접수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③ 접수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 9 조 (신고의 취소)

-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접수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접수부서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처리부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이송할 수 있다.

제 3 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 10 조 (공익신고의 처리부서의 결정 및 이첩)

- ①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담당할 처리부서를 정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는 인권센터 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등 구체적인 절차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인권센터 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단, 동 규정 제11조제1항의 간사는 인권센터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③ 접수부서는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심사하고 처리부서에 그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한다.

제 11 조 (공익신고의 처리)

- ① 처리부서는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처리부서는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부서에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처리부서는 공익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후 그 결과를 접수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익신고 연장 및 처리 결과의 통지)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접수부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제3항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 받은 접수부서는 그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협조요청)

- ① 처리부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자료의 제출
 -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 3. 소속 직원 파견 및 공동조사

- 4. 각종 자문
-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부서장이나 학과(부)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 ① 처리부서는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본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서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한 경우에는 접수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부서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익신고의 종결)

- ① 처리부서는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처리 또는 제14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접수부서에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접수부서는 그 내용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 16 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접수부서와 처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총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총장 및 모든 교직원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총장 및 모든 교직원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회유, 강요 또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접수부서와 처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회유, 강요 또는 지시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 18 조 (징계의 감면)

- ① 교직원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징계권자는 교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그 교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19 조 (공익신고자 보호)

-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접수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징계)

- 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본교의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2. 신고자 등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회유, 강요 또는 지시한 경우
 3.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회유, 강요 또는 지시 등의 행위를 한 교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교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1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